

대전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나2018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나201889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44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정준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신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현경

변론 종결 2023. 7. 18.

판결 선고 2023. 8. 2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44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0. 12. 7. 접수 제11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7~8행의 "피해자"를 "원고"로 고친다.
- 제2면 제11행의 "하여"를 삭제한다.
-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부족하고,"를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3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4면 제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을 삭제한다.
- 제4면 제11행의 "피고의"를 "피고가"로 고친다.

○ 제4면 제11행의 "부족하다."를 "부족하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E이 2020. 11. 9. 무렵 C가 G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F으로 하여금 G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받아 F에게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선의이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2020. 11. 9. G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1. 13.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가 같은 날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순영

판사윤이진

판사안영화